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디어위원회 신설〉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99호)

2024. 9.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수진 · 박정훈 · 신성범 · 김장겸 · 박충권 · 이상휘
김예지 · 김선교 · 성일종 · 구자근 · 임이자 · 최형두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 의안번호 : 289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처 또는 기관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임위원회 운영이 방송통신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u>	6. <u>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u>
가.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가.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 <u>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나. <u>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다. <u>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7. ~ 17. (생략)	7. ~ 17. (현행과 같음)
<u><신설></u>	18. <u>미디어위원회</u>
	<u>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그 소관 사항에 속한 의안 및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¹⁾로서,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소관을 기준으로 설치하며, 그 소관은 주로 정부부처를 기준으

1)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2024.7), p.179

로 분류하고 있음²⁾.

현행법 제37조제1항은 17개의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이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낮아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개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다루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각각에 대하여 특화되고 전문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2월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⁵⁾로, 방

2)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2024.7), p.181

3) “최수진의원은 국회 과방위의 전체 소관 기관은 81개에 달하지만 이 중 10%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개 기관에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16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해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과학과 방송 분리해야...” 2024.8.12.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95019>)

4)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송통신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천되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하였음.

[표-2]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현황

상임위원회명	소관기관	기 간	국회대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2008.8.25 ~ 2013.3.22	제18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3.23. ~ 2017.7.25	제19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7.26 이후	제20대 ~ 현재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소관 업무의 성격이 상이한 환경부와 고용노동

-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중)
-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부를 함께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1994년 6월 28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14대 국회에서 ‘노동환경위원회’로 설치된 이래 상임위원회 분리 없이 제22대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음.

국회 상임위원회 신설·통합 등의 결정은 위원장 배분과 맞물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으로 상임위원회를 몇 개로 운영할 것인지는 여·야 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담하여 소관사항으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각 분야 안전심사의 전문성·안정성 제고, 상임위원회 구성 관례 및 소관 정부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